

第 15 回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定期會)

内務委員會會議錄(附録)

(條例案審査)

第 2 號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目 次

- 1. 大邱直轄市達西區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對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21面
- 2. 93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案審査報告書..... 24面

大邱直轄市達西區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 對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1992. 12. 23
내 무 위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2. 11. 18
- 다. 회부일자 : 92. 11. 21
- 라. 상정일자 : 92. 12. 22

2. 제안설명 요지

- 가. 개정이유 :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무적차량 방지 및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
함.

나.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9조

다. 주요골자 : 1992. 12. 31까지 만료되는 동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 12. 31까지 연장코
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 개정안은 91. 12. 17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원안에 의하면 적용시한을
94. 12. 31로 연장 계상요구한바 91. 12. 17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3년을 1년으로
단축 가결되어 금년 12월 31일부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구
세과세 면제 시한이 만료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의 적용시한을 94.
12. 31까지 2년간 연장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찬 성 : 본 조례개정안은 가결하되 92년도까지 적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향후 조례
의 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촉구함.

반 대 : 없음

5.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개 정 조 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